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411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6. 12.

판결 선고 2020. 7. 10.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26179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7. 10.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0,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결혼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이하 '매칭서비스'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 1차 계약서에는, 회원가입비는 8,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15.부터 2018. 5. 15.까지 총 3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2 2차 계약서에는, 성혼사례금은 15,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4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필로 '앞전의 계약에 의해 성혼이 안 되었을 시 성혼사례비 지불계약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24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24개월간 최소 월 2회, 최대 무제한으로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회원가입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따라 2017. 3. 9. C과 만났고(이하 '이 사건 1회 만남'이라 한다), 2017. 3.

18. D과 만났다(이하 '이 사건 2회 만남'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분이 2019. 1.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제10조(계약의 종료)

1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4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급)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2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① 원고에게 상대 남성의 10년 전 사진을 최근의 사진인 것처럼 하여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2 50대인 원고에게도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한 매칭기준표가 적용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말을 바꾸어 '위 매칭기준표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위 매칭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매칭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24개월간 월 2회의 매칭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칭서비스를 2회 제공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회 만남은 이 사건1차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급금 지급 규정에 따라 $9,440,000\text{원} \{ = \text{회원가입비 } 8,000,000\text{원} \times (\text{잔여횟수 } 50\text{회} / \text{총횟수 } 51\text{회}) + \text{회원가입비 } 8,000,000\text{원} \times 20\%, 1\text{만 원 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1차 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어야 종료되고,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에서 성혼이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2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3회의 매칭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차 계약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2차 계약은 아직성립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2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환급금 지급 규정에 따라 $2,133,333\text{원} (= \text{회원가입비 } 8,000,000\text{원} \times 80\% \times (\text{잔여횟수 } 1\text{회} / \text{총횟수 } 3\text{회}), \text{원 미만 버림})$ 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및 계약내용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자필로 '앞전의 계약에 의해 성혼이 안 되었을 시 성혼사례비 지불계약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기재된 '성혼사례금 1,500만 원' 옆에 이미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및 피고 직원 E도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3회의 매칭서비스가 모두 제공된 후부터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24개월간 월 2회 매칭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계약 역시 이미 성립하였고, 다만 피고의 월 2회 매칭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가 모두 제공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앞전의 계약에 의해 성혼이 안 되었을 시 성혼사례비 지불계약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3회의 매칭서비스 제공 이후 이 사건 1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성혼이 안 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2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 1차 계약 종료시에는 가입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가 고액의 이 사건 1차 계약 가입비 반환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의 없이 3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셈이어서, 고객의 의사와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런 점에서 그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향후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매칭서비스를 통하여 성혼이 될 경우 성혼사례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해석함이 마땅한 점, ③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 제공으로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4개월간 무료로 월 2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통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는바, 결혼중개업자인 피고가 위와 같이 내용상균형을 잃은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면,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1회 매칭서비스 제공 비용은 3회 매칭서비스 때 성혼이 된 경우에도 약 266만 원(= 8,000,000원 / 3회)인 반면,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1회매칭서비스 제공 비용은 48회의 매칭서비스까지 가서야 성혼이 되는 경우에는 약 31만 원(= 15,000,000원 / 48회)이 되어, 원고가 1회 매칭서비스 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 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 기간은 2017. 5.15.부터 2018. 5. 15.까지이고,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 기간은 2017. 6.3.부터 2019. 6. 3.까지여서 상당 부분 겹치며, 피고 직원 E도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2년 (계약이) 훨씬 저렴하다. 2년 (가입비) 8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고, 총 51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이라고 이해하였다고 봄이 마땅한 점, ⑥ 피고 직원 E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계약의 가입비가 면제되었는데, 피고가 24개월간 월 2회 매칭서비스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을 때 원고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구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가입비 환불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어,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은 원고가 이해한 것처럼 총 51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은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그 계약내용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원가입비 8,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2017. 5. 15.부터 2018. 5. 15.까지 3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되, 위 처음 3회의 매칭서비스로 성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혼사례금 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위 3회의 매칭서비스로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24개월간 월 2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기간 내에 성혼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부터 성혼사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판단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일부개정)에서는, '결혼중개업'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대 남성의 10년전 사진을 최근의 사진인 것처럼 제공하면서 원고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위 사진 정보는 직업, 기혼 여부, 학력, 병력 등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외모 등 주관적·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가 50대인 원고에게도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한 매칭기준표가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에서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18. 이 사건 2회 만남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 상대 남성의 프로필을 추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위에서 본 '관리소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의 임의 해지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급금 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의 범위

(1) 살피건대, 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회 만남 전날인 2017. 3. 8.에 '피고 직원 E의 실수로 이 사건 1회 만남이 잘못 주선되었으므로 원고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이 사건 1회 만남의 상대 남성인 C과 만나되, 이 사건 1회만남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3회의

매칭서비스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2회만남을 가진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51회의 매칭서비스(=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3회의 매칭서비스 +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48회의 매칭서비스(24개월 × 월 2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2019.1. 16. 해지되었고, 위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입비환급금 6,274,509원(= 회원가입비 8,000,000원 × 80% × (잔여횟수 50회/총횟수 51회),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6,149,0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25,490원(= 전체 인용금액 6,274,509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6,149,01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7.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3. 28.이므로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 중 위와 같이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